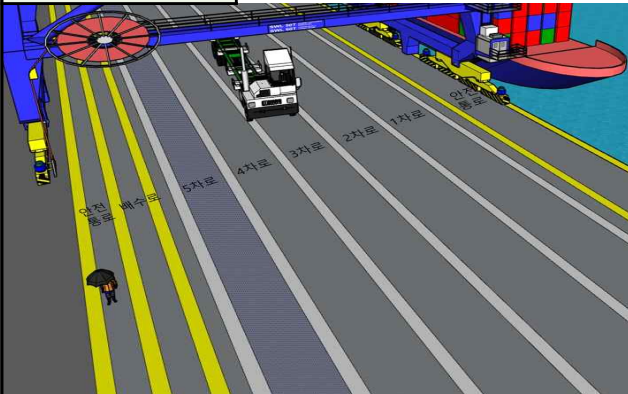


교대작업 후 보행 중 야드 트랙터에 부딪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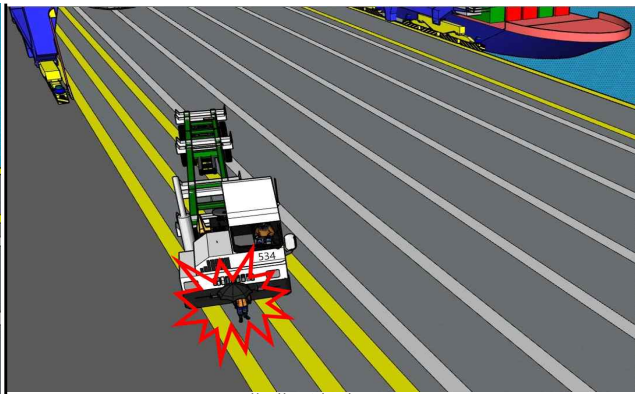
재해개요

- 2019년 ○월 ○일 20:55분경 부산 남구 ○○동 소재 ○○○○에서 컨테이너크레인 기사인 재해자가 교대 근무를 마치고 대기실로 걸어가던 중 선적작업을 마치고 컨테이너 야드로 운행중인 야드 트랙터와 부딪히면서 사망한 재해임

재해관련자료



<재해 상황도 1>



<재해 상황도 2>

재해발생원인

- 충돌 위험 구역에 대한 출입금지(통행금지) 조치 미흡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(통행)을 금지시켜야 하나 조치가 미흡함
- 근로자 근무복 시인성 확보 미흡
 - 사고 당시 재해자는 안전조끼 착용 후 우산을 쓰고 보행하고 있어 시인성 확보가 미흡함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(야드 트랙터)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
 - 운행경로를 지정하지 않고 운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운행방향 변경 및 회전함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(야드 트랙터) 운전자 주의 의무 미흡
 - 주행경로상의 작업자 위치를 파악하고 운전 하여야 하나,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주행함

재해예방대책

- 충돌 위험 구역에 대한 출입금지(통행금지) 조치 및 안전구역 마련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(통행)을 금지시키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
- 근로자 근무복 시인성 확보 개선
 - 안전조끼 외에 하의나 각반 등에 반사띠(2줄 이상)를 부착하여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함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(야드 트랙터) 작업계획서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따른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운전자 주의 의무 준수작업계획서
 - 운행 중 주행경로상의 위험여부 및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운행을 중단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